5.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O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
O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년 11월 24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김정기)

□ 제안이유

- O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,
- O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 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로 세분화 되고,
-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로 변경됨에 따라
- O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륜 등의 시행에 있어 장부 비치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신록휴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

▶ 상위법령인「지방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.

O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- ▶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장부 비치의 의무와 관련한 인용 조문을 법 제40조에서 제44조로 정비하였음.
- ▶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, 안 제20조, 안 제22조 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.

- (과세 목적별 분류체계 세분화) 특정자원 ➡ 특정자원분 / 특정시설분
- (과세 목적에 맞게 명칭변경)

제5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

■ 제5절 **소방분**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

개 정 전 (법 제146조)			
세분류	과세대상	목적	
특 정 자 원 (제1항)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	① 소방재원 ② 자원보호·개발	
특 정	건축물,선박	③ 환경개선	
부동산 (제2항)	건축물·토지	④ 지역균형개발	

개 정 후 (법 제146조)			
세분류	과세대상	목적	
특정자원분 (제1항)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	① 지역자원 보호·보전	
특정시설분 (제2항)	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회력발전	② 주민생활, 환경 개선 ③ 지역개발	
소방분 (제3항)	건축물, 선박	① 소방재원	
<삭제>	※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		

▶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의 조문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적절하며 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O 없 음.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- 6. 수정안 요지
- O 없 음
- 7. 심사결과
- O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
- O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- O 없 음